

의안번호	2207604
의 퇴 인	이수진의원
회 답 일	2025.02.16.
추 계 번호	25C0379

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응급환자 수용능력 확인을 위해 담당인력을 배치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96억 3,700만원, 2030년 111억 8,4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519억 7,100만원(연평균 103억 9,40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 \ 연도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연평균
수용능력 확인 등 (안 제48조의2)	9,637	10,002	10,379	10,770	11,184	51,971	10,394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48조의2 (수용능력 확인 등)	○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신속한 응급환자 수용능력 확인 및 인계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자와의 통신을 위한 전용 수신전화번호를 개설·운영하여야 함. 이 경우 응급의료 전용회선을 상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를 지정하거나 담당인력을 배치하여야 함(제3항) ○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기관이 응급의료 전용회선을 개설·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(제5항)	의무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실시 사유)
1	안 제48조의2 (수용능력 확인 등)	○	○ 유사사례를 참조하여 추계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본 추계는 전체 지역응급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전용회선 담당인력을 배치하고 인건비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경우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를 추계
- 개정안은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자와의 통신을 위한 전용 수신전화번호(이하 “응급의료 전용회선”)를 개설하고 담당인력을 배치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수반되는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
 - 현재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기관 평가지표 중 하나로 “이송 및 전원 의뢰를 위한 유·무선 핫라인 설치·운영” 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며, 2025년 1분기 기준 412개 전체 응급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전용회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¹⁾ 개정안은 현행 응급의료 전용회선 설치의 법적 근거 마련으로 볼 수 있음
 - 참고로,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“응급의료기관”은 권역응급의료센터, 지역응급의료센터,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구분하고 있음
 - 다만, 응급의료 전용회선의 담당인력 배치의 경우, 권역 및 지역센터와 달리 지역응급의료기관에 대한 강제규정은 없으므로 지역응급의료기관에 담당인력을 배치하고 이에 수반되는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동법 시행규칙 [별표 5의2], [별표 7]은 권역센터 2명, 지역센터 1명으로 담당인

1) 다만, 1개 지역기관은 2024년 11월 지정되어 2025년 1분기 내에 전용회선을 설치 할 예정임

력 배치기준을 정하고 있으며, 2024년 기준 권역센터 44개소와 지역센터 136개소는 담당인력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센터 2개소는 미충족함

- 본 추계는 보건복지부의 유사사례를 준용하므로, 응급의료 전용회선 담당자 배치 현황, 국비지원율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도 달라질 수 있음
 - 보건복지부는 “응급의료기관지원발전프로그램”을 통해 전체 권역응급의료센터 44개소에 응급의료 정보관리자²⁾ 2인 추가채용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음³⁾
 - 2025년 기준, 정보관리자 연봉 4,000만원에 국비지원율 70%를 적용하여 24억 6,400만원 배정
-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수용능력 확인 등(안 제48조의2)
 - 전체 지역응급의료기관 232개소에 응급의료 전용회선 담당인력인 응급의료 정보관리자를 1명씩 배치하고 국가가 인건비의 70%를 지원할 경우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를 추계
 - 개정안은 담당부서 또는 담당인력의 규모 등의 기준, 절차를 하위법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나, 본 추계서는 지역응급의료센터의 담당인력 기준(1명)을 준용함
 - 추계 결과, 2026년 96억 3,700만원, 2030년 111억 8,4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519억 7,100만원 소요
 - (인건비 단가) 2025년 기준 4,000만원이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명목임금상승률로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
 - (설치 대상) 지역응급의료기관 232개소
 - (국비지원률) 70%

2) 정보관리자는 동법 시행규칙 별표5의2, 별표7에 따라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가 갖추어야 하는 인력 중 하나로, “간호사, 응급구조사 또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면허·자격을 가진 사람”으로 응급의료 정보 관리 및 제공 업무를 전담하는 자를 말함

3) 지역응급의료센터의 담당인력에 대한 별도의 국고지원은 없음

[표 2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

(단위: 백만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합 계	연평균
수용능력 확인 등 (안 제48조의2)	9,637	10,002	10,379	10,770	11,184	51,971	10,394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본 비용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액은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,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
 - 또한 전체 지역응급의료기관에 일괄적으로 1명의 담당인력을 배정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므로 각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조직구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임슬기	이진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임슬기	02-6788-4740	sg.lim@assembly.go.kr